#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 402

제출연월일 : 2008. 10. 27. 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공기업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상수도사업의 설치근거를 법에 맞게 변경함(안 제1조).

나. 사업의 범위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삭제함(안 제2조).

다. 기타 중복 조문 및 문구를 간결 · 명료하게 정비함(안 제4조 등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신・구조문 대비표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2008. 9. 26 ~ 10. 16.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#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,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사업의 범위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  - 1.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
  - 2.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
  - 3. 그 밖의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
- 제3조(관리자의 지정) ①제2조의 상수도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. ②관리자는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보한다.
- 제4조(조직 및 인사의 건의) 관리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전 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건의할 수 있다.
  - 1.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
  - 2.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
- 제5조(기업관리규정) 관리자가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6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(이하 "상수도사업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상수도사업,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

회계로 통합한다.

- 제7조(회계연도)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.
- 제8조(재정지원) 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 및 부담은 무상으로 한다.
- 제9조(출자) ①대전광역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 할 수 있다.
  - 1. 창업시
  - 2.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
  - 3.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
  - ②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 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.
  - ③제1항에 따른 출자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.
  -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.
- 제10조(지방채)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수입금 마련 지출)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
  - 1. 당해 지출예산과목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
  - 2. 대전광역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- 3.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2조(잉여금의 처분)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

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.

- 1.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
- 2.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
- 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3항에 따른 배당납부금
- 4.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
- 제13조(계리상황의 보고)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- 1. 시산표(주요계정 명세서 포함)
  - 2. 자금운용보고서
  - 3. 예산집행 보고서
- 제14조(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)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,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사업의 현황
  - 2. 경리의 상황(다만,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)
  - 3.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【관계법령】

## 『지방공기업법』

- 제5조 (지방직영기업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·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·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- 제11조 (기업관리규정)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- 제13조 (특별회계)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동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2 이상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1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 2 이상의 사업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.
- 제14조 (독립채산) ①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.
  - 1. 경비의 성질상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
  - 2.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
  - ②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·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제17조 (출자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받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상황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.
- 제19조 (지방채)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 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- 1.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
- 2.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
- 3.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
- ②특별시·광역시 및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-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야 한다.
- 1.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·등록을 신청하는 자
- 2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
- 3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·수리·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
- ④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, 매입대상별 금액, 채권등록방법,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7조 (수입금마련 지출)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34조 (회계의 통할) ①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그 기업의 회계업무를 통할한다. ②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과 현금취 급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.
  - ③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.
- 제36조 (계리상황의 보고) 관리자는 매월말일 현재로 시산표·자금운용보고서와 당해 기업의 계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39조 (회전기금) ①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전기금은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한다.
  - ③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한다.
- 제40조 (중요자산의 취득·처분) ①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 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 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
- 제48조 (변상책임) ①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가 세입의 징수,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, 물품의 관리 및 지출의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. ②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.

## 『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』

- 제5조 (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)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 - 1.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
    - 가.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
    - 나.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 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
    - 다.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,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,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
  - 2.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
    - 가. 궤도사업(생략)
    - 나. 하수도사업(생략)
    - 다.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(생략)
    - 라. 의료사업(생략)
    - 마.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
- 제35조 (회계관계공무원)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<개정 2002.6.19>
  - 1. 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·지출원·자산출 납원·일상경비출납원·현금취급원 및 세입·세출외 현금출납원
  - 2.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
  - 3. 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워

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기업출납원·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- 제41조 (중요자산의 취득·처분)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법 제2조제1항제 7호·제8호 및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·처분하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.
  - 1.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(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)인 자산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,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  - 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(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)인 토지
  -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득·처분결과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46조 (회계운영에 관한 규칙)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(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)은 당해지방자치단 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#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2008.11.28 교육사회위원회

## I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10.27 대전광역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8.10.28

다. 상 정 일 자 :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2차 교육사회위원회(2008.11.28)

상정, 질의, 심사, 원안가결

# II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상수도사업본부장 안규상)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공기업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수도사업의 설치근거를 법에 맞게 변경함(안 제1조).
- 나. 사업의 범위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삭제함(안 제2조).
- 다. 기타 중복 조문 및 용어를 간결·명료하게 정비함(안 제4조, 안 제6조, 안 제8조, 안 제13조).
- Ⅲ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안문환)

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「지방공기업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 하려는 사항으로,

###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는 목적을,
- 안 제2조는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등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,
- 안 제3조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관리자로 지정 하였으며,
- 안 제4조는 관리자가 대전광역시장에게 조직 및 인사에 대해 건의 할 수 있는 사항을,
- 안 제5조는 관리자가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을,
- 안 제6조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, 상수도사업 등을 상수 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는 내용을,
- 안 제7조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8조는 일반회계 등의 재정지원 및 부담은 무상으로 하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9조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10조는 지방채의 발행과 원리금의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11조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수입금의 마련 지출에 관한 규정을,
- 안 제12조는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13조는 상수도사업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시 이에 관한 규정을,
- 안 제14조는 관리자가 시장에게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정한 사항으로,

##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「지방공기업법」이 2008년 2월 29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중복조문 및 용어 등의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·보완코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

- Ⅳ. **질의·답변 요지** : 생 략
- V. **심 사 결 과** : 원안가결
- Ⅵ. **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 음